

『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제조항을 삭제하고, 모호한 조항은 정비하며, 성별영향평가와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유통분쟁 해결과 소비자 등의 권익 보호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과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 위원회 구성 방안 보완(안 제2조)
 - 위원장 대상을 당초 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
 -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반영으로 위원회의 성비를 규정
-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조항 삭제(안 제10조)
 - 상위법과 달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5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하게 규정한 조항을 삭제
- 조정 거부 사유 중 애매한 조항 삭제(안 제13조)
 - 분쟁의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구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
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 조항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
조정의 조정 신청시 50인 이상의 연서 제출, 분쟁조정의 거부 및
중지에 관한 불명확한 사항을 정비하여, 원활한 유통분쟁 해결과
소비자 등의 권익을 보호 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
적합하다고 판단됨.